

■ 한국전자인증(주)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관련법"이라 한다)과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인증"이라 한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증서"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접수/처리 및 신원확인 등 가입자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6. "가입자"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
8. "가입자 정보"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사고정보: 전자금융사고 또는 공동인증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기기정보 및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 명시 및 개정)

- ① 본 약관은 인증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한국전자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주전에 이를 고지한다. 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한다.
-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본 약관의 공지는 한국전자인증 웹사이트(<https://www.crosscert.com>)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약관 변경의 고지는 진단과 동일한 방법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 4 조 (약관 외의 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관련법 및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제 5 조(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수수료)

-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종류와 용도, 인증수수료 등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 ③ 제 5 조 2 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을 명시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 6 조(인증서비스 가입신청)

- ①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한국전자인증 또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3.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납부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였거나 사고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6.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 ③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관련법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인증서 발급코드를 제공한다.
- ④ 가입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한국전자인증의 웹사이트(<https://www.crosscert.com>)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코드를 입력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⑤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

제 7 조 (인증수수료의 환불)

- ①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 만료일로부터 14 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②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증서의 효력 등

제 8 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제 9 조 (인증서의 이용범위)

- ① 한국전자인증은 개인과 법인/단체/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며, 공동인증서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단체/개인사업자(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전자조달/민원업무, 국제청 전자세금계산서/민원업무
2. 법인/단체/개인사업자(용도제한용): 전자계약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원산지 증명 업무, 조달 비축물자 업무
3. 개인(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 민원업무
4. 개인(용도제한용):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정부 민원업무, EMR 전자서명 업무, 내부 업무용
5. 서버(범용): 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

제 10 조 (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본 약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본 약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 11 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 ②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
- ③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제 12 조 (인증서의 폐지 등)

- ①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인증서가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6.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없는 경우
7.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
-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제 13 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및 인증서의 이용제한 등)

- ①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13 조 1 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 ③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사망, 실종,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이 인지한 경우
7.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8.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절차나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9.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10.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1.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4 조 (한국전자인증의 의무)

-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인증서 및 상품 환불 처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5 년간 보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가입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_____ (서명)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서명하여야 합니다.